기계분야

1. 재해발생 경위

2002년 5월 ○일 14:40분경 경기도 동두천 ○○공 업(주)작업장에서 재해자가 피혁제품을 펴주는 셋팅 기 내부에 떨어진 가죽 찌꺼기를 제거하던 중 동료작 업자가 풋 스위치를 밟아 유압실린더가 작동되면서 실린더 연결축사이에 협착사망한 재해임.



2. 세메밀맹 보인

가 셋팅기기동장치에시건장치미설치 나.셋팅기기동장치에표지판미부착 다.셋팅기측면개구부방치 라.작업지휘자미배치

3. 재해 요인도

4. 동쫑째해예방 대책

가.셋팅기기동장치에시건장치설치

셋팅기 점검·정비.청소작업 전 주전원 차단 후 가 동스위치에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시건장치 열쇠는 별도관리

나 셋팅기기동장치에 표지판부착

셋팅기 기동장치에 청소작업 중 조작금지 표지판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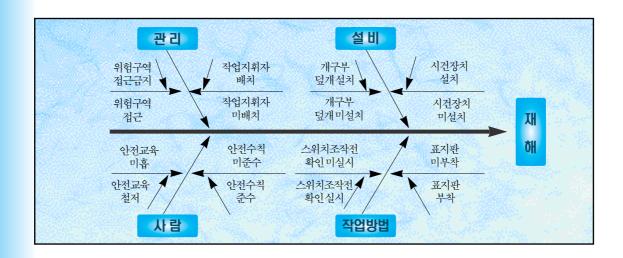
다.개구부방호덮개설치

셋팅기 측면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개구부에 방호 울을설치

라.작업지휘자배치

점검 · 청소작업 중 기계가 불시에 작동될 위험이 있는 곳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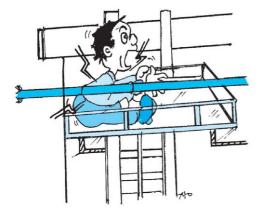
- 법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 는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이하의 벌금



전기분야

1. 재해발생 경위

2002년 3월 ○일 10:50분경 경기 성남시 ○○산업에서 운반용고가사다리차로이사짐을 운반하던 중고가사다리차 운반구에 탑승하여 5층 연립주택에서 내려오다가 건물에서 2m 떨어진 22,900V 특별고압에 접촉하여 감전사망한 재해임.



2. 째해발생 요인

가.특고압전로근접지역에서무리한작업 나.고가차운반구에작업자탑승 다.충전전로방호조치미실시 라.절연보호구미착용

3. 째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충전전로에접촉위험없는작업방법선정

특별고압근접작업시작업자의신체또는고가사다리차 등이 충전전로에 접촉하여 감전될 위험이 크므로 안전한 작업위치, 안전한 방법을 선정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함

나.운반구에작업자탑승금지

고가사다리차 운반구에 작업자 탑승을 금지시켜 특 별고압접촉에 의한 감전재해나 추락사고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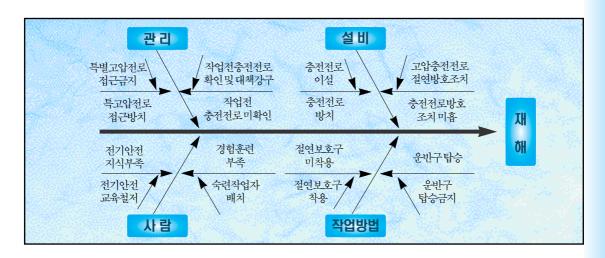
다.충전전로에방호조치철저

충전전로 근접 지역에서 작업을 해야 할 경우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이탈되지 않 도록견고히 고정 후작업

라.절연보호구착용

전기시설 근접작업시 절연화,절연모,절연장갑 등 절 연보호구착용함으로써작업시갂정사고예방

- 법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이하의 벌금



화공분야

1. 재해발생 경위

2002년 3월○일 10:30분경 경기 시흥시 ○○전력 (주)작업장에서 유류저장탱크 내부 녹제거를 위해 헝 겊에 신나를 묻혀 탱크내부를 닦는 작업 중환기의 필 요성으로 환기 후 탱크내부로 들어가 전기기계기구 사용 중 스파크에 의해 폭발이 발생하여 화상으로 사 망한재해임.



2. 째해발생 요인

가.화재위험장소안전조치미흡 나.폭발위험장소일반기계기구사용 다.인화성증기환기조치미흡 라.화재폭발안전지식부족

3. 재해 요인도

4. 동쫑깨해예방 대책

가.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사용

폭발위험장소에는 방폭성능을 가진 전등, 핸드그라 인더 등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를 사용

나.MSDS비치및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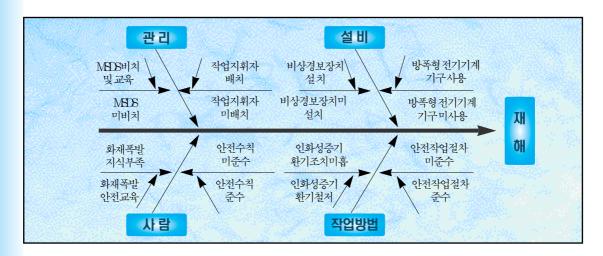
사업장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MSDS를확보하고유해위험성을검토하여 작업자에 게교육을실시

다.밀폐공간 작업시 작업환기 실시 및 가연성 가 스측정

유류저장탱크 등밀폐공간에서 인화성물질의 사용으로 인화성 증기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자동경 보장치의 설치와 환기를 실시하고 인화성 증기농도 를측정하여 안전을확인한 후작업

라.화재·폭발등안전교육강화 화재·폭발등소방교육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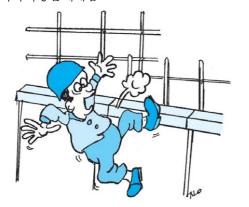
- 법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이하의 벌금



건설분야



2002년 4월 ○일 14:20분경 경남거제시 (주) ○○ 건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환기구 옹벽 거푸집내 수직 철근을 핸드그라인더로 절단하기 위해 환기구 내부비계 위에서 작업하다 실족하여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깨해발생 요인

가.작업발판미설치 나.추락방지조치미실시 다.작업계획미수립 라.안전교육미흡

4.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안전한작업발판설치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폭 40cm 이상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함.

나 추락방지조치 철저

비계를설치한상태에서 작업할경우에는 추락위험이 있는 비계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상태로 작업하여야함.

다.안전한작업계획수립철저

작업전후속작업과연계성을고려하여실족추락과 같은 불안전한 작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작 업계획수립및관리가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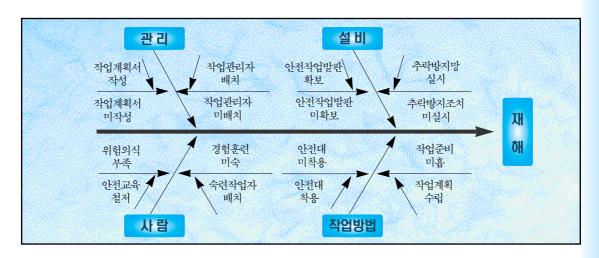
라.안전교육철저

고소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사항과 작업방법 에 대해 교육실시

5. 법위반 사항

- 법제23조안전상의조치위반5년이하의 징역 또 는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제31조제1항근로자 안전교육미실시 500만 원이하의 벌금

3. 깨해 요인도



ď.

재해사례연구 항만하역분야

1. 재해발생 경위

2002년 4월 ○일 17:30분경 전남 목포시 ○○해운 (주)소속 재해자가 곡물 사료백을 화물차에서 컨테이 너로 옮겨 싣는 작업을 확인하던 중 후진하는 지게차 바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요인

가.후진경보장치미설치 나.작업지휘자미배치 다.지게차후사경조정불량 라.작업계획서미수립

3. 재해 요인도

4. 동쫑깨해예방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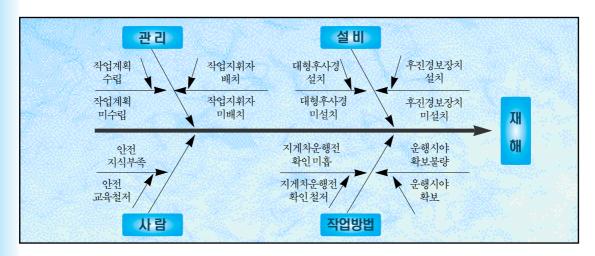
가,지게차후진경보장치설치

지게차 후진시 근로자와의 접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후진경보장치를 설치(후진시 후방의 작업자 및 장애물을 초음파로 감지하여 이격거리 표시 및 경보 음을 울려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안전장치)

- 나.작업지휘자에의한관리감독철저
-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한 상하차 작업시에는 작업 지휘자를지정
- -작업순서,작업방법수립하여지휘
- -기구및공구를점검하고불량품제거
- -작업장소에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 -상하차작업시화물낙하위험확인
- 다.대형후사경부착

후방시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대형후사경을 설치하여후면의 사각지역을 최소화

- 법제23조안전상의조치위반5년이하의 징역또 는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제31조제1항근로자 안전교육미실시 500만 원이하의 벌금



기타분야

1. 재해발생 경위

2002년 5월 ○일 10:20분경 충북 음성군 ○○산업 (주)작업장에서 3단으로 적재된 페인트 드럼 위에서 출고할 페인트 종류 및 수량을 파악하던중 목재 파렛 트가 페인트 드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 서 드럼과 함께 높이 3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임.



2. 째해발생 요인

가.사다리또는작업발판미사용 나.보호구(안전모)미착용 다.적재물 붕괴위험 방치 라.강도가약한목재 파렛트사용

4. 동쫑째해예방 대책

가.작업발판설치

높이 2m이상적재대에 올라갈 경우 안전하게 올라 갈수 있는 작업발판이나 사다리를 사용.

나보호구착용

고소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위해 안전모 안전대 등보호구를 착용.

다.적재방법개선

드럼 등 중량물 적재작업시 평탄한 비닥에 강도가 충분한파렛트를 사용하여 2단이하로 안정되게 적재

라.목재파렛트점검

중량물 적재용 파렛트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판재나 각목의 상태를 점검하여 손상된 것 은폐기처리.

5. 법위반 사항

- 법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 는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이하의 벌금

3. 째해 요인도

